제433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방금지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외>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38호)

2026.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2. 제 안 일 : 2025. 1. 8.

3. 회 부 일 : 2025. 1. 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후보자비방죄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第251條(候補者誹謗罪) ----------후보자----------.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을 비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후보자비방죄 조항은 1994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당시부터 현행법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의 입법목적을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후보자비방죄의 입법목적》

구 분	헌법재판소 판례
후보자비방죄 (2010헌바53)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은 선거시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과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을 자행하여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하고 사회혼란까지 야기하였던 과거의 선거현실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다. 즉,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비방금지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고, 비방금지 조항의 단서[1]에 위법성

1)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각사유가 있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사나 형사소추의 위험이 존재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나선 만큼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2]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2024.6.27., 2023헌바78, 공보 333》

【결정요지】

가.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비방금지 조항의 '비방'은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비방금지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방금지 조항 단서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수사나 형사소추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방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여 그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선거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비방금지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위헌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위헌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